

46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이 국 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이 국 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01

2020년 검찰개혁의 성과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제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러 몇몇 성과를 내놓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과 검찰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의 개혁 작업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검찰개혁 과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소위 ‘조국 대전’을 거치면서 이미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독립하여 문민통제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으므로, 검찰 인사제도만 합리적으로 손질하면 이 또한 정상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2020년 검찰개혁의 성과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패키지로 묶었던 제도 정치권의 전술로만 개혁작업을 시종했다면, ‘조국 대전’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검찰조직을 생각할 때, 이 정도라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2020년 검찰개혁의 또 다른 성과는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삼는 대규모의 시민세력이 조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규모 장외집회를 조직한 이들의 기세는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그동안 신문과 방송이 독점해 온 검찰개혁의 기본 프레임을 의문시하는 차원을 넘어, 레거시 미디어와 검찰조직의 밀착 관계를 폭로하는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연 성공한 것일까? 제도적 차원의 성과와 이를 정치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시민세력의 조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참조가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치는 제도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이 긴밀하게 조율될 때, 가장 효능이 높아진다. 지난 70여 년의 헌정사에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제도적 차원의 성과가 미미한 가운데, 정치적 차원의 비판만이 극단적으로 높아졌던 일종의 비대칭성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2020년 검찰개혁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제도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의 비대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다만, 문제는 이로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리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 점에 관하여 간략한 논의를 전개해보려고 한다. 먼저 대한민국 검찰 제도의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

02

대한민국 검찰 제도 소사(小史)

대한민국의 헌정사 70여 년에서 검찰 제도의 흐름은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45년에서 1950년까지 미군정 하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검찰 제도가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로 자리 잡는 시기이다.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총동원체제를 구축했던 일제 강점기 말기,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검찰조직을 형사사법의 권력 중추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흐름은 종전 이후 일본에서는 좌절되었으나, 미군정 하의 남한에서는 형사 사법제도의 기축을 이루었다. 미군정이 일제 강점기 권력의 중추였던 경찰조직을 온존 시키자 사법조직을 이끌던 법률가들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강화했다. 행정부 소속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형사 사법과정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면서 법관들과 대등한 위상을 누리는 기괴한 형사사법구조는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제2기는 1950년에서 1970년까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긴급 형사기구들이 무소불위의 위세를 누리는 가운데, 검찰조직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이다.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권력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특무대, 보안사, 중앙정보부 등으로 대표되는 긴급 형사기구들이 압도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검찰 권력은 제도적 차원에서 검찰 관료제의 구축에 집중했다.

제3기는 1970년에서 1988년까지 군사정권 내부에서 공안조직을 중심으로 검찰 권력의 위상이 점점 높아진 시기이다. 대한민국의 특이한 형사사법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검찰조직은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군사정권의 수요를 상당히 만족시켰고, 그 과정에서 무력이 아니라 형사사법을 통하여 권력을 운용하는 노하우를 축적하여, 군사정권 아래서 다수의 검찰 출신 법률가-정치인들을 배출했다.

제4기는 1989년에서 2002년까지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과거청산을 고리로 삼아 검찰조직의 정치적 위상이 극적으로 높아진 시기이다. 40년에 걸친 권위주의-군사정권이 물러가자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기괴한 형사사법구조가 완전히 부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검찰조직은, 애당초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가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구속기소로 돌아서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주재자로서 최강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었다. 이후 검찰 권력은 제도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되었다.

제5기는 2003년에서 2019년까지 이처럼 압도적인 제도적 위상을 활용하여 검찰조직이 스스로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권력으로 작동한 시기이다. 검찰조직은 주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이나 친인척 문제 등에 집중하여 직접 수사 권한을 행사하고, 기소 및 불기소 권한 또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심지어 정치 권력의 향배에까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되면서, 검찰조직과 정치 권력의 연계를 막고, 검찰조직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론이 제시되었다. 검찰총장 임기제, 재정신청확대, 특별검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수사권 재조정, 자치경찰제, 기소배심제도, 공판중심주의,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포함한 검찰인사제도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03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과도기적
위상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 헌정사 70여 년의 검찰 제도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스스로 명확해진다. 그것은 '과도기'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주지하듯, 과도기란 특정한 원리가 지배하는 한 시대로부터 그와 전혀 상이한 원리가 지배하는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특수한 시기를 말한다. 따라서 과도기를 지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역설', 즉 서로 다른 원리들의 모순적인 공존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유념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정에 내포된 매우 복합적인 면모를 이해하기 어렵다. 2019년 9월 9일 이후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존재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순적인 공존은 모든 국민에게 바로 이러한 역설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엇에서 무엇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가? 이 질문에서 앞의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기괴한 형사사법구조, 즉 검사를 형사사법 절차의 전지전능한 주재자로 전제하는 이 구조가 클라이맥스를 구가한 것은 흥미롭게도 민주화 이행과정이 완성단계에 이른 2003년 이후의 제5기였다.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화의 성과를 검찰조직이 제도적으로 만끽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행과정의 완성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권력 구조를 작동시켰고, 동시에 그것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근본적인 역설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사태전개일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여 탄핵에 이르게 하고, 직전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철저히 단죄했던 2016-8년의 적폐청산과정은 말 그대로 검찰 권력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검찰조직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위의 시대구분에 따르자면, 이것은 해방공간에 만들어진 기괴한 형사사법구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그와 전혀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나아가려는 선택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9년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관하여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결정지은 정치적 승부수였다.

2020년 3월 현재 한국 사회의 검찰개혁은 2019년 9월 9일 이후 시작된 과도기에 놓여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하여 효력 발생을 앞두고 있으나, 이 두 법률만으로는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와 새로운 검찰 제도를 구성하기에 대단히 부족하다. 두 법률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자치경찰제의 문제나 정보 경찰의 통제 문제, 그리고 수사기관들의 재구조화 문제마저도 산적한 개혁과제의 규모에 비하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던진 질문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결국 두 번째 무엇이 무엇인지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스스로 열어젖힌 과도기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당연한 말이지만,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기괴한 형사사법구조를 극복하려면, 헌법적 차원에서 법관과 검사 같은 법률가 권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하며 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검찰개혁의 과도기는 뚜렷한 전망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이하에서는 하나의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04

핵심 질문 : 법률가는 과연 사실 판단의 전문가일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치는 공적 권력들 사이에 작동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삼권 분립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입법-행정-사법의 치열한 경쟁을 기능적 권력분립의 기축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이 세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 것인가에 귀착한다. 주지하듯 입법 권력은 시민의 선거로 뽑힌 대표들로 구성하고, 행정 권력은 법적으로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행정 관료제를 직간접의 선거로 뽑힌 대표들이 지휘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사법 권력의 조직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 정치를 살펴보면 각각의 법적 전통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고, 또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특징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사법 권력의 최종적인 행사 권한을 법률가라는 특정한 직업집단에 맡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치가 일종의 법률가 정치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하나의 핵심 질문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다. 과연 법률가는 사법 권력의 최종적인 행사 권한을 가지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집단인가? 만약 그렇다면, 법률가가 사법 권력의 최종적인 행사 권한을 가지는 것은 비단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치에 국한되는 현상이어서는 안 된다. 마치 어떤 정치체제이건 질병의 치료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의사라는 특정한 직업집단에 주어질 수밖에 없듯이, 사법과정의 운영과 최종적인 사법 판단의 권한 역시 정치체제가 무엇이든 법률가가 독점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법률가는 이처럼 보편적인 직업집단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 사법과정에서 도출해야만 할 두 가지 최종 판단, 즉 법적 판단과 사실 판단 모두에 관하여 법률가는 보편적 우위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는 흔히 도덕적 판단으로 지목되는 규범적 판단 전반에 대하여 결코 보편적 우위를 내세울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통찰을 목표로 하는 더 근본적인 관점들, 예컨대 문학, 사학, 윤리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과 같은 접근 방식들이 엄존하는 까닭이다. 법률가의 우위는 단지 그와 같은 근본적인 관점들을 통해 얻은 규범적 판단을 법적 과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가공한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판단에 국지적으로 관철될 수 있을 따름이다. 대규모의 법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법률가가 법전의 해석 전문가로 행세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

법률가가 판례의 해석 전문가로 행세하는 것은 법률가의 우위가 생각보다 매우 협소한 영역에 존재함을 뜻한다. 법률가의 양성과정은 사실 이 국지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판단의 이식과 공유의 과정이나 다름없다.

그나마 국지적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판단과 달리, 사실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는 도무지 어떠한 우위도 내세우기 힘들다. 무엇보다 법률가의 양성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실 판단의 노하우를 학습하거나 평가받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가의 양성과정은 온통 법전 또는 판례의 형태로 국지화된 법적 판단의 체계와 원리와 대요와 세목들을 나름의 논증과 함께 익히는 과정일 뿐이며, 사실 판단의 노하우에 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분야의 과제로 제쳐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과정에서 사실 판단과 그나마 가장 가까운 증거법의 영역에서조차 법률가는 사실 판단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증거 주장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위험부담으로 증거를 채택할 수 있을지에 골몰한다. 법률가는 결국 증거법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특정한 증거 주장을 ‘자유롭게’ 법적으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따름이며, 결코 자신의 부담으로 사실 판단을 확정하지 않는다. 요컨대, 사실 판단에 관하여 법률가가 내리는 최종적 사법 판단은 증거의 충분/불충분이라는 코드(code)에 의존한다.

물론 사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의 9할 이상이 사실 판단인 까닭에 사법과정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법률가는 사실 판단에 관한 훈련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률가가 사실 판단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얻은 결과일 뿐, 법률가라는 직업 그 자체와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법률가가 직업상 수사과정에 수십 년 동안 참여하면서 수사의 노하우를 익히고 익혀 최고의 수사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사관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지 법률가로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든 법률가는 훈련 없이도 최고의 수사관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은 법적 판단 이전에 사실 판단의 전문가가 되도록 요청한다. 최고의 수사관이 된 법률가는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수사관으로서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이 경우 그 수사관은 법률가가 아니라 수사관으로서 평가받아야 옳다. 사법과정에 등장하는 이른바 ‘감정증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사실 판단에 관해서는 그 전문가들이 법률가보다 더 신뢰할만하다. 단지 그 사실 판단에 관하여 사실 판단의 전문가들조차 양립할 수 없는 증거 주장들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만, 법률가는 어쩔 수 없이, 증거의 충분/불충분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갈등과 분쟁을 끝내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개입할 따름이다. 이때 법률가는 단연코 사실 판단이 아니라 최종적인 분쟁 해결의 전문가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치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국가들은 사실 판단에 관한 권한을 법률가가 아니라 그 사실 판단의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쪽으로 사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일반 시민들이 사실 판단을 담당하는 기소배심, 심리배심 제도나 아예 전문가 법관을 운영하는 참심제도는 그 단적인 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노동, 사회보장, 지적

재산권, 의료분쟁, 국제 조정 등의 여러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사실 판단 전문가들과 법률가들이 공동으로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흐름이 주류가 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법관임용과 인사제도를 포함한 사법행정 역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판단이라는 인식 아래 헌법적 차원에서 '사법행정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구를 두는 방향으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 요컨대, 법률가는 사실 판단의 전문가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국지적 전문가이자 최종적인 분쟁 해결의 전문가일 뿐이라는 깨달음이 일반화되고 있는 셈이다.

05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추진 방향에
관하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관해서 하나의 초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다소 장황해진 소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업적 정체성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검찰조직을 수사와 기소로 이원화하겠다는 법무부의 시도에 대하여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는 기소에 종속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언급은 위에서 논의한 핵심 질문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가진 입장을 단적으로 내보인 측면이 있다. 수사라는 사실 판단은 기소라는 법적 판단에 종속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래 처리한 사건들에 비추어, 이러한 언급은 듣는 사람들의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든다. 피의자의 소환 없이 수사내용만을 가지고 기소를 강행한 사례들은 오히려 반대의 이유로 ‘기소는 수사에 종속되는 것’이라는 명제를 내놓아야 일관되지 않을까? 짐작하건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의외로 명백할 수 있다. 만약 ‘기소는 수사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법률가가 아니라 수사관이라는 사실, 즉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판단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공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법률가가 맡아야 할 검찰총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이 언급을 통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수사관이 아니라 법률가라는 사실을 고백한 셈이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법률가인가? 흥미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는 기소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 그것이 타당한 이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논증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 이와 같은 언명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명제로서의 타당성을 따져 볼 가치조차 없다. 달리 말해, 이 언명이 가치를 가지려면, 그 명제를 가능케 만드는 어떠한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는 기소에 종속되는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 앞에 혹시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기묘한 형사사법구조에서는’이라는 조건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법률가가 수사관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중국에는 법률가의 직업적 자아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기묘한 형사사법구조’에서 대한민국 검사가 맞닥뜨려야 하는 숙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이 조건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까?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에서는’이라고 점잖게 한마디만 덧붙였더라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계가 등장한다. 만약 이 조건을 드러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청산되어야 할 과거에 속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속한 과거의 구속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는 ‘수사는 기소에 종속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논증 없이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법률가가 검사로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자타가 공인하는 그 수사의 전문가가 되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때 그 성취는 법률가로서 이룬 것인가? 아니면 수사관으로서 이룬 것인가? 이 법률가/수사관의 내면에 법률가와 수사관이라는 두 개의 직업적 자아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법률가/수사관이 검찰총장이 되었다면, 그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과연 이 둘 중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수사관의 직업적 자아에 법률가의 직업적 자아를 종속시키는 것 같다는 대중적 관찰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률가의 직업적 자아에 수사관의 직업적 자아가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논증이나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해방공간에서 만들어진 기묘한 형사사법구조’에 속한 법률가/수사관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역설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향에 관하여 이 글은 이미 ‘법률가는 과연 사실 판단의 전문가일 수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시사를 제공한 바 있다. 법률가는 사실 판단의 전문가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국지적 전문가이자 최종적인 분쟁 해결의 전문가일 뿐이다. 만약 이 명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인다면, 우선 수사과 같은 사실 판단의 전문가가 태부족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한 체계적인 양성계획을 입안하면서, 그 결과가 축적되는 것에 발맞추어, 법률가는 기소와 공판과 판결이라는 법적 판단 및 최종적인 분쟁 해결의 영역으로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세대가 족히 걸릴 이 과도기에서 최고의 법률가인 검찰총장이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의 범주를 헛갈리거나,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에 관해 혼란을 겪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0년 2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